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 정부주도 다문화 담론의 한계와 극복을 중심으로



이 용 재 (경북도의회)
(laski@hanmail.net)

국문요약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인 증가하면서 정부는 국민만들기의 동화정책을 다문화정책으로 추진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정부주도 “다문화” 정책의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현상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관심을 끌면서 관련연구도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다문화담론은 다문화주의의 넓은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문화연구의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고, 동화를 통한 국민만들기에 치우치게 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와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가 31.32%와 11.38%로 가장 많았고, 갈등에 관한 연구는 1.54%에 불과했다. 또한 다문화연구 편수 또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변화와 맥을 같이해 2010년과 2012년 이후에 감소하는 등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민자를 수용하는 정부의 시혜적·도구적·계층적 시각이 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다문화현상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문화연구는 인구유입의 현상적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따른 내적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다른 층위의 행위자들이 소통하는 평등한 권력관계의 형성으로 풀어가야 한다.

주제어 : 다문화주의, 다문화연구, 동화, 통합, 갈등

I. 문제제기

역사는 이주와 함께 만들어진다. 세계 제국으로 성장한 로마는 트로이와 알프스에서 남하한 인도-유럽어족의 라틴족에서 시작되었고, 훈족의 침입을 받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그 막을 내렸다. 우리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조선은 위만(衛滿)과 그를 따르는 1,000여 명이 연나라에서 이동해오면서 철기시대를 열고, 새로운 고대국가를 형성하였다.¹⁾ 고구려·백제·신라 또한 새로운 문명 혹은 세력을 통해 급격히 성장했다. 새로운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관용'은 성장과 변화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열로 인한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이주가 기존 사회체제에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자본과 상품과 함께 사람들 또한 국경을 넘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주에 대해 스티븐 카슬과 마크 J. 밀러는 「이주의 시대」(1993)에서 오늘날 이주는 세계의 사회와 정치를 개편하는 초국가적 혁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2000)에서 오늘날 이주현상은 보편적 일상이며, 근대적 국가의 국경통제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하고, 이주라는 유령이 출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에게도 이주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주민들의 삶은 이미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고, 매일 직접 혹은 매체를 통해 그들을 만나고 있다. 이주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다.

유엔(United Nations 2017)에 따르면, 고국을 떠난 이민자의 수가 2000년 1억 7,260만 명에서 2017년 2억 5,770만 명으로 8,510만 명, 약 49.3%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는 외국인노동자가, 2000년대에는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8월에 100만 254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08년 6월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인구의 약 3.9%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1년에는 국내체류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주민의 증가가 이들에 대한 호의적 시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오랜 이민국가인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연합이 결성된 이후 인도·파키스탄 등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고, 실업률이 치솟자 이주민들로 인해 복지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설한 2014, 83).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1) 위만 조선에 대해서는 사마천의 『사기(史記)』와 반고의 『한서(漢書)』에 따르면 연나라 사람으로 요동일대에서 천여 명을 모아 준왕(準王)의 외신(外臣)으로 있다가 왕이 되고, 왕검성에 도움을 정했다고 한다.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는 현재의 통설을 반영한다.

사회위기가 심화되면서, 변화에 대한 거부와 함께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반이민정서(anti-immigration feeling)의 확산은 2001년 이슬람 테러집단에 의해 발생한 9.11사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외부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국가 안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애국자법”(Patriot Act)이 2001년 10월 26일에 제정되었고,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 발생한 방리유(Banlieue) 사건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톨레랑스’를 강조하며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강조하였던 프랑스 이민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프랑스에도 이민자들은 주류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배제되어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민자들의 저항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 대한 거부도 드러나고 있다.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비판하고, 무슬림의 추방을 요구하면서 당시 노동당 정부와 노동당 청년 캠프에 대해 테러를 감행해 76명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민자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거부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민자들의 저항은 이들의 사회통합을 지향하였던 다문화정책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1970년대부터 다문화주의를 표방했던 호주는 2007년 1월에 ‘이민 다문화부’를 폐지하고, 동화를 제시함으로써 다문화주의의 공식폐기를 선언하였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10년 10월 17일에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기독교민주당(CDU) 청년 당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력은 이미 실패했으며,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민자들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2월에는 영국의 캐머린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또한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이야기했고, 유럽의회도 다문화주의 실패에 동의하는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민자들이 주류문화로 동화를 통한 통합을 주장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시간당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수렴되면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 또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경쟁자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그들의 사회적 기여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어진 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노동자들은 불법체류외국인으로 그들의 존재마저 부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배제와 갈등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노동자들을 포함해 모든 사회적 다름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다문화가정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011년 74.2%였지만,

2013년에는 67.5%로 6.7%p 감소하였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응답 또한 2011년 25.8%에서 2013년 32.5%로 6.7%p 상승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감소하고, 부정적 응답이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한국 사회가치를 어지럽힌다는 응답은 2010년 15.7%에서 2013년 21.5%로 5.8%p 증가하였고, 한국사회로의 적응 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같은 시기에 24.6%에서 27.2%로 2.6%p 증가하였다(아산정책연구원 2014). 또한 한국사회가 다민족, 다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2010년 60.6%에서 2015년 49.6%로 11.0%p 감소하였고, 다른 인종, 언어, 종교, 문화를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10년 48.9%에서 2015년 56.9%로 8%p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한국인 국적 취득을 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5년 30%에서 2010년 40.7%로 10.7%p 증가하였지만, 2015년에는 34.2%로 2010년에 비해 6.5%p 감소하였다(이내영 외 2016).

이처럼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발(backlash)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여 온 한국의 경우 이러한 한계는 더욱 명확하다. 이민자들을 일방적으로 주류사회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동화정책은 이민자들의 저항을, 복지적 시각에서 이들을 시혜대상으로 다루는 지원정책은 이들을 사회적 부담으로 간주하는 내국인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을 국민 혹은 사회적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으로 바라보는 도구적 시각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동화에서 배제로 이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필요에 따라 이주민을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족으로 나누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통해 정부 주도 하에 다문화정책의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면서 외국인노동자를 배제하고,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면서 형성된 다문화담론은 오늘날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담론으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많은 다문화연구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다문화사회의 필요성과 사회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다문화주의 정서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문화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다문화담론에 치우친 다문화연구는 다문화사회가 초래하는 '갈등'을 외면하고 있다. 역사는 문화적 이종교배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늘날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이 초래하는 필연적 갈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연구의 현실을 돌아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통합의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II.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1. 다문화주의 등장 배경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할 것인가 혹은 거부할 것인가라는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새로운 문화의 수용방식에 대한 갈등이다. 역사적으로 다문화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갈등은 민족국가의 형성을 통해 '민족'과 '민족문화'라는 단일성이 형성되고, 형성된 단일성의 붕괴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러 신분이 공존하는 신분제 사회를 거쳐, 각각의 지역적 기반을 가진 봉건귀족들이 강력한 권력에 의해 통합되면서, 왕권국가가 탄생하였다.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독립성이 인정되면서 근대국가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1789년 프랑스혁명을 통해 왕을 대신해 주권을 가진 새로운 근대국가가 등장하였다. 또한 프랑스혁명은 모든 사회적 신분과 특권을 형식적으로나마 거부하면서 천부인권사상 안에서 모든 인간들을 국민으로서 서로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정치체제로서 국가는 국경을 단위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었고, 국가적 단일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족'개념은 국가 안의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배제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한 정치체제의 성원이 아니라 공동의 운명을 가진 민족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국가의 경계 안에서 종족을 뛰어넘어 언어·문화·역사적 경험을 함께 공유했다고 간주하는 역사적 운명공동체로서 민족이 등장한다. 어니스트 겔러(Ernest Gellner 1983)는 민족주의를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를 일치시키는 정치적 원리라고 지적한다. 민족주의는 다시 공동문화로서 국가문화 또는 민족문화가 민족국가 통합의 강력한 이데올로기(Ideologie)로 작동하면서 민족주의는 문화적 단일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박정수 2013, 8). 배제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경을 경계로 단일한 민족이 만들어졌지만, 때로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다름으로 인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국경 내에서 민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민족국가는 국가를 구성한 이후에 민족주의를 통한 내적통합으로 형성하는 것과 종족 혹은 민족이 민족주의를 통해 형성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민족주의가 민족을 형성하기 때문에 민족은 새롭게 창조된 구성적 존재로 인식되지만, 후자는 민족이 역사적 실체이기 때문에 '역사성'과 '혈연의 계보적 연대'를 통해 강조된다. 민족을 통해 근대민족국

가가 형성하는 이 형태가 민족을 근대 이전의 산물로 보는 역사주의적 민족주의가 주장하는 '역사적-문화적 공동체'로서 '종족적 민족'과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박정수 2013, 9). 이처럼 민족은 때때로 국가와 동일시되면서 동시에 국경을 넘는 새로운 운명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근대민족국가는 국가를 하나의 운명적 단위로 간주하게 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형성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많은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랑스 군과의 전쟁을 통해 유럽은 국경 안에 속한 사람들을 국민으로,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결집시키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1806년 나폴레옹과 프로이센의 예나 전투(Battle of Jena)에서 프로이센이 대패하고, 이로 인해 1807년 7월 7일 틸지트 조약(Treaties of Tilsit)이 체결되었을 때 피히테(J. G. Fichte 1762~1814)는 프랑스의 프로이센 점령에 항의해 1807년 12월부터 독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강연을 시작하였다. 이 강연은 유명한 「독일 국민에게 고함」(Reden an die deutsche Nation)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어, 독일 국민들에게 독일 민족주의를 각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주체가 왕에서 국가로 전환되고, 국가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통일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공동의 운명공동체인 민족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국경을 경계로 한 내적 단일성과 외적 이질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민족국가의 형성은 주권에 기초한 정치권력체인 국가와 언어·종족·종교 등에 기초한 문화공동체인 민족이 동일시되면서 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그 민족의 구성원으로 간주되고, 국민의 자격은 혈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국가의 운명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국민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민족의 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가를 단위로 제도적 국민과 함께 정서적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국가단위의 사회통합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국가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 국가의 생존과 관계없이 자신의 민족과 국가의 생존만을 강조하는 제국주의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자기민족의 운명을 국가권력을 통해 다른 민족에 대한 배척과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던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세계는 민족국가의 운명적 구성원이 아닌 보편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자행되었던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위해 1948년 12월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성원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와 지위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확산은 기존의 권위를 거부하고,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새로운 권력구성의 방식을 수용하였다. 그동안 강조되었던 단일성에 대한 회의와 새롭게 등장한 다양성에 대한 추구가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단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들 속에서 새로운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개인의 자유와 사교의 자유로움에 대한 추구는 프랑스 68혁명을 거치면서 기존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확산되었다. 전통적 단일문화개념이 후퇴하고, 수직적·수평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으로 문화개념이 확대되면서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서적(階序的) 질서에 기초한 권위가 해체되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류문화로 인해 배척되었던 하위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존의 권위에서의 질주와 탈주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화형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의 등장은 이러한 인식적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한다.

2.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캐슬과 밀러(Castles & Miller 1993, 247-249)는 '편입'의 양식을 동화, 통합, 다문화주의 등으로 구분하고 이주민의 일방적 편입으로서 동화와 점진적 편입으로서의 통합과 달리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이 이주사회의 핵심적 가치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그들의 고유한 문화, 종교, 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주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1970년대 이후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에서 개인을 주류사회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벗어나 소수집단의 문화·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비유럽계 이민자들이 본국에서의 생활방식과 언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와 갈등을 일으키자, 정부가 동화정책을 완화하고, 이들 이민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새로운 민족국가 정책을 시작하였다(Ang Ien 2010).

이처럼 다문화주의는 서구사회에서 그들이 가진 문화가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이주자들의 문화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양성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민족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주도 기획"(Forrest, James & Kevin Dune 2006, 206)이다. 이용승(2004, 182)은 다문화주의를 국가, 인종, 민족 등의 거시적 차원에서부터 사회의 소외계층과 소수자 혹은 세대 갈등이나 성 역할의 차이 등 미시적인 문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라고 지적하면서, 1970년대를 전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혹은 운동의 목표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윤인진(2008, 73)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도록 하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이 개인을 주류문화에 동화시키는 정책에서 이들의 집단적 문화정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요인에 대해 킬리카(Will Kymlica 2005)는

1960년대 이후 인권의식이 확산되고, 소수 인종에 대한 인권의식과 소수인종의 권리의식이 고양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합의가 확산되어, 주류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을 관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김비환(2007)은 자유화와 민주화에 따른 인권의식이 확립되어 소수인종 및 문화집단들에 대한 인정과 공존의 수용이 제시됨에 따라 다문화주의가 등장하였다고 하고, 이용승(2011)은 근대민족국가의 형성 이후에 20세기 후반 국제이주가 증가하면서 문화적 우열관계에 기초한 동화정책이 이주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동반하였지만,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소수자들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분출시키게 됨에 따라 국가와 주류민족이 이들의 욕구를 무시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을 다문화주의 등장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용재(2012)는 다문화주의 등장요인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누고, 내적요인으로 문화의 수직·수평적 다양성의 확대에 의한 생활세계의 내적 체계분열을, 외적요인으로 외부문화의 수용으로 인한 생활세계의 외적 체계유입을 제시하면서, 외적 체계의 유입은 내적 체계분열로 인한 수용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 내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를 그 정책적 방향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기도 한다. 마르티니엘로(Martiniello 1997, 89-107)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개입 정도와 개별문화의 자유와 정체성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온건(soft) 다문화주의’와 ‘강경(hard) 다문화주의’로 구분한다. 온건다문화주의는 사적 공간에서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소비방식의 다양성, 개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추구태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강경다문화주의는 민족적 정체성 문제에 주목하고, 근대민족(국민)국가의 정체성의 확립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류사회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따라 소수집단들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강경다문화주의는 다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구분한다. 자유주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개인들을 사회의 중심으로 두고, 공적영역이 아닌 사적영역에서 소수문화를 가진 개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한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는 사회는 개인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로 구성되므로, 소수문화공동체의 정체성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한다.

요네야마(米山リサ 2006, 350-354)는 ‘자유주의적(liberal) 다문화주의’와 ‘비판적(critical) 다문화주의’로 구분하면서, 관용과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복수의 문화와 역사적 전통이 지배적 공적 공간에서 공정한 취급을 받고,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추구하고,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의 차별성과 문화 간 관계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권력과 구조의 문제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차이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대적 가치를 승인하면서도 그것을 기성공간으로 포섭하고 한계지운다고 비판한다. 비판적 다문화주의가 주목하는 것은 이미 차이를 계서화한 주류적 지배문화의 가치규범이다. 지배문화의

우위성이 암묵적으로 관철되는 가운데 소수문화에 대한 자율성의 인정을 통해 마치 공적 공간이 가치중립적이어서 어느 집단이든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은 지배계급이나 사회적 다수자의 가치관이 규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한다.

다문화주의는 사회가 가진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일원적이고 동화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공존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문화주의의 스펙트럼은 하나의 국가 안에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이질적 집단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일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가치와 다른 개인적 신념과 행동양식을 지니고, 지배적 문화가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지배적 주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문화에 대한 다른 신념과 다른 생활모습을 가진 다른 인종·민족으로 구성된 집단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상대성을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조현상 2012, 225). 이를 통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제·종교·가치·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집단이 하나의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상태를 포괄(이신동 외 2017)한다.

Ⅲ. 한국의 다문화연구의 현황

다문화주의의 폭넓은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논의는 주로 인종과 출신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주요대상은 남성으로 간주되는 외국인노동자와 여성으로 간주되는 결혼이민자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남성으로 간주되는 외국인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여성으로 간주되는 결혼이민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이라는 주제 하에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모두 논의의 대상을 이루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는 임시적인, 결혼이주여성은 영구적인 통합의 대상이라는 차이를 가진다.

한국의 다문화연구는 외국의 다문화정책을 소개하는 초기연구를 거쳐,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인권보호를 통해 그들이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인간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인구학적 변화의 시각에서 인종과

출신국가의 다름에 기초해 문화적·언어적 동화를 통한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연구는 조현상(2012, 227)의 지적처럼, 이주노동의 유입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여년의 기간과 결혼이주여성의 유입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다문화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 결혼이주여성, 2000년대 이후 외국인유학생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다름을 전제로 이들을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국민만들기(Nation building)를 지향하는 통합·동화정책으로서 다문화연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노동자(Guest-worker)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국적과 인종·언어·민족의 다름을 이유로 사회의 경계에 서 있는 소수자들에 대해 주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이들이 유입국의 필요에 따라 초대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는 국가정책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했다.

오늘날 다문화정책의 주요대상인 결혼이민자는 2000년에 24,081명으로 체류외국인 491,324명의 약 4.9%에 불과했고, 불법체류외국인은 205,205명으로 체류외국인의 41.8%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각각 6.7%와 15.0%로 그 비중이 변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대부분 이주노동자인 불법체류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 1〉 결혼이민자와 체류외국인 현황

년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결혼이민자	24,081	75,011	141,654	151,608	152,374	155,457	159,206
체류외국인	491,324	747,467	1,261,415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불법	205,205	204,254	168,515	214,168	208,971	251,041	355,126

출처: e-나라지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년도별 통계연보

1980년대 후반에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은 관광 또는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취업하였다. 1991년에서 2006년까지 시행된 산업기술연수제도(‘산업연수제도’로 변경)는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시킴으로써 경제적·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는 고압적 자세를 보여준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는 과도한 입국경비와 낮은 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스스로 감수해야 했고, 사회적으로는 불법체류, 송출비리,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4년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는 2006년까지 병행되었고, 2007년 1월에 비로소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어, 고용허가제가 오늘날까지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인력제도의 근간역할²⁾을 하고 있다(설동훈 2017, 88).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와 업종은 고용인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체와 건설업, 요식업, 사회복지사업, 청소년관련사업 등의 몇몇 서비스업과 농·축산업 및 연근해어업 등의 일부 업종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고, 3년의 고용계약과 2년 미만의 재계약 규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5년 미만의 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적법』제5조(일반귀화 요건)제1호에서 외국인의 귀화허가의 조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가 증가하면서 2017년 12월 19일 『국적법』일부개정을 통해 제5조(일반귀화 요건)제1의2호로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을 신설하여 불법체류자의 일반귀화신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일시적 필요에 따라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새로운 국민 혹은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는 혈연적·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의 유지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정주를 포함하는 ‘이민사회’라는 용어 대신에 내국인과 결혼하는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다문화’정책의 범위를 한정하고, 선별적 포섭과 배제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는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문화정책의 주요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1970년대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 시작되고, 1980년대 국제적 위상이 증가하면서 국내

2)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신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약 7만 9천명에 달했다. 이중 산업연수제를 통해 약 3만 8천명이 유입되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4만 1천명이 유입되었다. 2004년 당시 농축산업에 약 2만 7천명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었지만, 이후 농축산업의 외국인 인력은 점차 감소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노동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문화적 비대칭이 심화되었고, 베이비붐 세대 이후 심화된 성비불균형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역인구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총각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제결혼을 통하여 지역 농촌의 인구감소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국제결혼이 1990년에는 4,710건으로 외국인아내보다는 외국인남편과의 결혼이 더 많았다. 그러나 1995년에는 13,494건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남편보다는 외국인아내와의 결혼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 1990년과 1995년을 비교하면 국제결혼의 건수는 약 2배가 증가하고, 외국인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한다. 2000년도 이후에 국제결혼은 저개발국 출신의 여성들이 빈곤탈출의 방법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는 특징은 결혼이주가 국가 간의 불균형한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인종·계급·젠더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장명선·이옥경 2008, 3)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외국인노동자처럼 정부의 정책적 주도에 따라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표 2〉 국제결혼 현황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합계	4,710	13,494	12,319	43,121	34,235	21,274	20,591	20,835	22,698
외국인아내	619	10,365	7,304	31,180	26,274	14,677	14,822	14,869	16,608
외국인남편	4,091	3,129	5,015	11,941	7,961	6,597	5,769	5,966	6,09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및 연도별 국가별국제결혼건수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정부는 이민자문제를 정책의제로 제시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국적법』(1997)과 『출입국관리법』(2005)이 개정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에 이어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이 제정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³⁾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

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함과 동시에 한국인 가족의 며느리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드러내고, 영구체류와 귀화를 전제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을 출입국 통제 및 관리를 담당하던 법무부에서 이관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 및 가족업무를 이관 받아, 결혼이주여성정책을 가족정책차원에서 주관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과정에서 제명을 “다문화가족”과 “이주민가족” 중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정하게 된다. 사실상 “이주민가족”(Migrant Families)이 UN의 공식용어였지만, 당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관계조정을 위해 외국인노동자가족, 재외동포가족 등을 포괄하는 “이주민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⁴⁾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기존의 재한외국인정책과의 차이점은 2007년 6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을 위해 개최된 “혼혈인·이주민·다문화가족 지원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달리 국적취득 이전뿐만 아니라 이주 경험을 가진 한국국적을 가진 가족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이들이 한국사회에 원만하게 통합되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외국인노동자와 달리 이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혼인귀화자 누계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8,991명에서 2018년 129,028명으로 약 3.3배가 되었고, 여성귀화자는 가 되었다. 또한 2015년 혼인귀화자 중 결혼이주여성이 남성의 19배에 달한다.

또한 국적취득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전체의 약 62.97%를 차지하고, 2013년에는 80.04%까지 그 비중이 올라간다.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국적취득 유형에서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은 전체국적취득의 67.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5년 이상의 거주기간에 대하여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일반귀화의 경우에는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전체국적취득에서 차지하고 비율이 평균 2.77%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2004년 12월 27일에서 2005년 5월 22일까지 실시한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을 말한다. 연구수행기관은 (재)미래인력연구원이고, 수행연구원은 설동훈 교수가 진행하였다.

4) 2007년 5월 3일 국무조정실 주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회의를 통해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재한외국인 정책을 법무부가 총괄하고, 여성가족부는 외국징정책실무위원회 산하 결혼이민자 관련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결혼이민자대책을 주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여성가족위원회, 2007).

〈표 3〉 혼인귀화자 누계 현황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혼인귀화자	38,991	56,584	69,804	76,473	83,929	90,439	92,316	114,901	121,339	129,028
귀화남성	2,624	3,796	4,317	4,268	4,264	4,261	4,563	-	-	-
귀화여성	36,367	52,788	65,487	72,205	79,665	86,178	87,753	-	-	-

출처: 통계청,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2007년-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6년-2018년)

〈표 4〉 연도별 국적취득(귀화) 유형별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6,312	16,090	10,541	11,270	11,316	10,924	10,108	10,086	
일반	154	130	103	133	298	323	566	715	
간이	혼인	10,271	10,733	7,733	9,021	7,607	6,966	6,375	6,438
	기타	181	388	184	291	475	618	413	304
특별	5,706	4,839	2,521	1,677	2,717	2,778	2,382	2,238	
수반취득				148	217	239	372	391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연감」(연도별)

이처럼 결혼이민자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정책적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의 동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체류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과는 다른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의 개념적 범위는 국민만들기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에 제한되고 있으며, 지원정책 또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및 생애지원, 그 자녀의 교육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문화'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 또한 정부의 이러한 개념범위에 구속되어, 다양한 다문화논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다문화 담론의 선점과 주도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논의를 포함하지 못하고, 대상과 정책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이후 다문화논의를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방향

국내 다문화에 대한 초기연구로는 미국의 다문화현상을 국내에 소개한 이종석의 “미국 다문화교육의 이론적 고찰”(1984)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이종석은 다문화논의가

196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인종 간의 갈등과 민주주의 이념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단일민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는 용어 그 자체가 낯설고, 관심도 없는 영역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국내에서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김동훈(1985), 브라이언 L. 에반스(1989), 설기문(1993) 등의 연구로 이어지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학위논문 중에서 다문화에 관한 연구는 초기연구로 고은정의 석사학위논문(1994)과 황규철(2000)의 박사학위논문⁵⁾을 들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유입과 취업에 대한 설동훈의 연구(1992)와 이해경(1994)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차별을 인권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하고 하였던 최돈길(1995), 박석운(1995)의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유명기(1997), 함한희(1997) 등도 체류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문제를 다룬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에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이미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주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조현상 2012, 222). 2000년대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적응문제를 제기한 홍기혜(2000), 한건수(2006), 김연수(2007) 등의 연구가 있고,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부부간의 갈등문제를 연구한 윤영주(2001), 김오남(2006)의 연구와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문제를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 조영달(2006), 오성배(2006) 등의 연구도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중심이 된 다문화연구는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시작한 2005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2008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국내 다문화담론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을 체류외국인과 달리 새로운 정책적 대상으로 범주화하고, 기존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정부 주도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따라 다문화연구의 대상 또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으로 축소되었다. 정부에서 시행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인력 정책과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5) 다문화 관련연구로 김동훈, 1985,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재일교포, 교포정책자료 23, 해외교포문제 연구소. 에반스, 브라이언 L. 1989, 다문화주의와 캐나다의 아시아정책, 캐나다 연구 1, 75-86. 설기문, 1993, 다문화주의적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학생연구 21, 43-61. 고은정, 1994, 다문화 중심주의의 개념 접근에 따른 음악교육의 방법론 시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과 황규철, 2000, David Mamet의 작품에 나타난 유대성과 다문화주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하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다문화’ 및 ‘외국인 인력’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용역 현황

	합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다문화	82	-	-	-	-	-	-	2	5	7	8	7	8	9	4	7	10	5	6	4
외국인인력	91	1	-	-	1	2	2	1	6	5	7	12	8	11	3	8	7	8	5	4
합계	173	1	-	-	1	2	2	3	11	12	15	19	16	20	7	15	17	13	11	8

출처: 온나라정책연구 (2019. 06. 28.).

외국인인력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91건이 진행되었고, 다문화관련 연구용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82건이 진행되었다. 또한 외국인인력 관련 연구용역은 2000년 이후 점차 증가해서,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다문화관련 연구용역은 2006년 이후 점차 증가해서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인력에 대한 연구용역 중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직접 키워드로 하는 연구용역은 2004년 “국내외국인노동자 차별해소방안연구”와 2008년 “외국인노동자관리대책”으로 단 2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력으로 보고, 이들의 사회정착이 아니라 국내 노동력의 수급상황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정책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표 6〉 ‘다문화’를 제목으로 하는 학술논문 현황

년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다문화	38	110	254	371	435	436	422	387	327	228	196	157	138	3,499
교육	12	23	85	101	146	158	114	122	110	68	69	41	47	1,096
가족	-	14	14	43	59	54	65	47	37	29	17	21	14	414
지원	4	7	11	28	35	34	31	29	23	13	12	9	10	246
여성	9	6	10	16	21	25	29	14	16	10	11	6	6	179
결혼	5	7	9	12	23	22	23	12	11	11	6	6	7	154
통합	2	11	11	21	19	16	19	18	16	8	9	7	7	164
갈등			3	3	6	3	10	12	5	4	2	3	3	54

출처: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www.kiss.kstudy.com) (검색일: 2019. 06. 28.).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에서 “다문화”를 제목으로 하는 학술논문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가장 많은 편수를 보여주고 이후에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정부가 다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시기와 정부용역이 증가하는 시기와의 중복된다. ‘다문화’를 제목으로 하는 학술연구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에 관한 연구는 2006년에서 2018년까지 연구 편수 중 31.32%(3,499편 중 1,096편)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는 2007년에서 2018년까지 연구의 11.83%(3,499편 중 414편)를 차지하는 데, 이는 다문화가족의 동화와 적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지원, 가족, 여성, 결혼을 제목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보인다. 이에 반해 다문화사회의 ‘갈등’에 관한 연구는 2008년에서 2018년까지 54편에 불과해 전체 연구의 1.54%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의 ‘통합’에 대한 연구는 164편으로 ‘갈등’에 관한 연구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관련 연구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유사하게 교육과 지원을 통한 동화와 통합에 주목하고 있으며, 갈등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다문화’를 제목으로 하는 분야별 연구 현황

년도	합계	사회과학	어문학	인문학	예체능	자연과학	의약학	농학	기타
다문화	3,499	2,102	460	395	148	122	59	20	193

출처: KISS (검색일: 2019. 06. 28.).

〈표 8〉 ‘다문화’를 제목으로 하는 사회과학 분야별 연구현황

년도	합계	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사회 복지학	인문 지리학	법학	정치 외교학	심리학	기타
다문화	2,102	853	394	217	206	77	72	61	59	163

출처: KISS (검색일: 2019. 06. 28.).

‘다문화’를 제목으로 하는 학술논문 중에서 사회과학 분야가 2,102편으로 전체의 60.0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교육학 분야가 853편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40.58%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사회학 분야가 394편으로 18.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치외교학 분야는 61편으로 2.90%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또한 그동안 다문화연구가 동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현상에 관찰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반해 소수 문화공동체를 주체로 보고, 이들과 주류문화공동체 사이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다문화연구가 이들을 객체로서 동화의 대상 혹은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주로 했으며, 이들을 주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인정과 승인을 위해 투쟁하고 갈등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입장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IV. 다문화연구의 한계

다문화연구의 넓은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연구는 그 대상과 접근이 매우 협소하게 진행되어 왔다. 해외의 이론과 현상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그러하듯이 다문화연구 또한 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논의로 전개되었지만,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들을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인력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 함께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문화정책으로 자리 잡고, 정부에 의해 다문화담론이 주도되면서, 국내 다문화연구의 스펙트럼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과 한국에서의 적응과 동화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여성’적 역할과 지위 부여는 이들을 국내체류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와는 다르게 범주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다문화연구가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담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문화대상의 범위를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사회적 지위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른 서열화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다문화담론 내로 투영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면서, 이들을 정책적 시혜대상으로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면서, 사회기층에 위치시키고, 시혜적 정책과 계층적 시각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인 시각의 다문화 담론의 한계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다문화논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정부는 경제성장과 함께 3D업종에 대한 기피를 외국인노동자를 통한 노동력공급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고, 농촌과 도시의 경제격차로 인한 농촌 인구감소와 결혼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필요 등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를 했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지원 및 보호라는 시혜적 시각에 기초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접근과 달리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규범적 시각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다문화논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과잉정책화'와 시민단체의 '과잉규범화'가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만들기라는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출산·양육의 관점에서 시혜적 지원정책을 다문화정책으로 추진하였고, 시민단체는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체류외국인의 보편적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다문화담론이 형성되면서 에스닉(Ethnic)의 성장을 막고, 이들을 기존의 주류문화 내로 포섭하고자 하는 정책이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조현상 2012, 237). 정부의 국민국가 프레임과 시민단체의 보편가치 프레임에 기초해 균형 잡힌 다문화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국민국가 프레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최종렬 2012, 101).

이와 더불어 유의미한 논박과정을 거치지 않고 규범성을 획득하고 있는 다문화논의로 인해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도입된 다문화정책이 대다수가 동의하는 이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이용승 2011, 73).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이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논의는 그 대상의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는 주제 하에 함께 논의되면서 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국가 관점의 정책들이 시민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 인권 관점의 규범화와 혼동되면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시행을 규범적으로 정당화시키는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회는 일원적 가치구조를 넘어 다원적 가치구조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담론이 사회적 다문화현실과 격차를 벌이면서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다문화담론에 따라 일부 언론들이 외국인들의 인권이나 지위문제보다는 다문화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조현상 2012, 222). 이들은 국가경쟁력으로 간주되었고⁶⁾, 이들에 대한 지원은 그들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혹은 그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시혜로 이해되었다.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정책의 대상이 됨으로서 이들은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머물게 되고, 정부는 다문화담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권력문제'를 회피하였다. 이들의 수동성을

6)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국가경쟁력으로 간주하는 현상은 지금도 여전하다. 2-3개 언어를 구사하는 우리사회를 이끌 인재라는 주장은 이들을 국가에 필요한 유용한 자산으로 보는 도구적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중앙일보 2018/12/12; 한국일보 2018/06/26).

가정하고, 일방적인 시혜를 국가차원에서 베푸는 방식의 다문화정책은 이들의 수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정책적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한다(이용승 2011, 74).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 담론은 다문화사회의 또 다른 주체인 화교, 혼혈인,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 등이 정부와 주류사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이민자에 대한 도구적·계층적 시각의 다문화 담론의 한계

독일에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이민자가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 인종 및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상태로 규정한다. 우리 정부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들을 통칭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이민자의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된 상태를 이민자의 사회통합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최혜지 2017, 219-220).

오늘날 사회는 다양하게 분열되고, 갈등은 점차 심해지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억만장자들의 부는 9천억 달러가 증가한 반면, 38억 명의 극빈층의 재산은 11%로 감소하였다. 빈곤한 38억 명의 극빈층의 자산을 억만장자 26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43명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에서 2016년 사이에 가장 빈곤한 50%가 세계 수입 증가분 1달러당 12센트만을 차지하였는데 반해 상위 1%는 1달러당 27센트를 차지하였다(OXFAM 2019, 11-12). 또한 경제협력기구(OECD 2015)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1.55배 수준으로 조사대상 22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결혼이주여성은 연예결혼과 종교적 이유를 제외하고 결혼정보회사와 개인브로커를 통한 결혼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위해 이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베트남·중국의 경우 약 500만원에서 1,500만원,

7) OECD의 “2015년 고용전망”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외국인의 임금격차의 72%가 기술의 차이에서 나고, 기술의 차이가 없다면 임금격차는 1.36배 수준이며, 기술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을 한다면 그 격차는 1.21배로 낮아진다고 한다.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내국인에 비해 임금이 약 17% 정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2019. 2)의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용직노동자의 임금은 359.2만원, 임시·일용직노동자의 임금은 142.9만원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이 상용직노동자 임금의 39.76%에 불과하고, 근로시간은 상용직 171.2시간, 임시·일용직 98.6시간으로 약 57.59%에 불과했다. 이를 같은 노동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임금은 69.04%에 불과해 결국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이 상용직노동자의 임금보다 30.96% 낮게 나타난다.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임금격차는 내외국인 노동자 임금격차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카자흐스탄의 경우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불되는 비용의 일부는 결혼지참금으로 신부의 가족들에게 지불되고, 이로 인해 금전과 신부가 교환되는 매매혼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그들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역량에 아니라 출신국가에 따라 사회적·인종적으로 계층화되고,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서열이 주어진다. 출신국가의 발전수준에 따라 존재하는 차별적 대우는 가난한 국가에 온 이들에 대해 시혜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로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전영평 외 2006).

이처럼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와 차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 지위(직업, 소득)이라는 응답이 33.8%, 학력과 학벌이라는 응답이 16.2%로 낮은 소득과 학벌이 우리나라 차별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낮은 소득으로 노동자의 기저(基底)층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낮은 소득계층에 편입되어 별도의 직업을 가지지 못한 결혼이주여성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은 8.1%, 다문화가정자녀의 인권은 12.3%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인권상황에 대한 응답도 외국인 노동자는 2.1점, 결혼이주여성은 2.4점, 다문화가정자녀는 2.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방적인 지원정책들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오히려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지원정책이든, 비록 그것이 적극적 평등실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조적·제도적 차별의 반대급부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김성운 2018, 115).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수동적 객체로서 지원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더구나 동화를 통한 통합을 위해 교육적 공간에 매몰된 연구들을 통해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처해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열악함을 외면하게 하고, 각종 긍정적이고 따뜻한 윤리적 담론들 속에 묻어버린다(조상식 2009, 149).

또한 다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배제하고, 결혼이주여성은 수용하는 선택

8)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6월 20일 개최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실태와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920명이 평균 16.37년을 한국에 거주하였지만, 응답자의 70.7%가 직업이 없었고, 60%는 개인소득이 없다고 답했다.

적 수용·배제는 정책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갈등 이외에 이주민들 사이의 새로운 갈등구조를 만들어 낸다. 또한 주체로서 사회체계 내에서 다른 주체들과 연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자원배분은 권력구조의 갈등을 통해 새로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다문화정책의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고, 외국인노동자를 배제하는 새로운 국민만들기는 ‘배제를 통한 연대’를 형성한다. ‘배제를 통한 연대’는 연대의 약한 고리가 깨지면, 약한 고리들의 이중배제를 생성하게 된다(이용재 2012, 54). 따라서 지금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을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이민자와 내국인 사이에 고립시키는 새로운 배제를 초래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국민만들기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종족적 민족주의의 단일가치 체계 내로 이들을 편입시키는 계층적 시각의 한계를 가진다.

V. 향후 과제

다문화주의의 등장요인으로 주로 이주민의 유입을 들곤 하지만, 다른 인종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온 역사는 오늘날 다문화주의가 등장한 시기보다 오래되었다. 개체는 다른 개체들과의 차이의 간격을 통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의 간격으로서 다양성이 자연적이다. 오히려 사회적 경계를 통해 개체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범주로 묶어내는 유사성을 통해 경계와 경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방식이 인위적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다름이 개체의 자연적 존재방식이라면, 같음은 사회적 존재방식일 수 있다.

다름을 같음으로 묶어내는 사회적 경계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문화적 산물이다. 오늘날 다문화주의는 경계 사이의 차이를 경계 내부로 끌어들이 내적 차이와 외적 차이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따라서 이주민의 유입이라는 외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차이를 바라보는 문화적 인식의 전환이라는 내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인종·언어·문화적 유사성을 같음으로 바라보는 견고한 단일성을 정치적 경계로서 국경과 일치시키면서 등장한 민족국가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다원화로 인한 내적균열에 직면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채택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전통적 이민국가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처럼 정책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에 대한 논의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논의가 다문화담론을 견인하면서 대상 또한 정주(定住)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고, 새로운 국민인 이들을 위한 시혜적 지원정책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논의 대상은 시민사회의 규범적 논의와 정부의 정책적 논의대상으로 분리되면서,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책개념이 부재하고, 소관부처 또한 불분명하여 체계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설동훈 2017, 103).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문화담론의 영향을 받은 다문화연구들은 동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지향하여 교육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다문화논의는 새로운 갈등구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시혜적 관용의 시각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특권구조를 비판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들이 직면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세계에서 문화 간 소통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연구는 “문화 자체보다는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론에 가장 잘 부합하는 문화개념을 규정”(Scott 2003, 96)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 보다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소통을 위한 다양성은 경계를 통한 개념적 범주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개체들의 상호소통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권력관계는 물질 기반과 관념적 기반의 상호 간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사회의 주류와 비주류, 다수와 소수의 경계는 계속 변해왔다. 따라서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다문화 연구 또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우리 상황에 맞는 모델과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통적 이민국가인 호주·캐나다를 비롯한 서구 유럽의 경험에 기초한 다문화 모델과 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다문화논의에서 제시되는 윤리적 태도와 덕목들이 서구 '근대성'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인식의 밑바탕에는 서구 유럽 문명만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요구하는 관습·규범·관행을 표준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근대성'이라는 가정이 놓여 있다. 근대성은 윤리적 선이자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것이다(조상식 2009, 150).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맞는 다문화연구를 위해서는 서구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수용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갈등요소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갈등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종·언어·문화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은 그것들의 차이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별이 그것들의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 2019.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2019. 2.).
- 구정우 외. 2016.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6. 12).
- 김비환. 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통합 :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10(2), 317-348.
- 김상섭. 2017. 문화 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전개 양상, 문화교류연구 6(1), 21-49.
- 김성수. 2018. 문화의 다양성과 현상과 연결되는 다섯 용어에 대한 검토: 혼종문화, 다문화, 상호문화, 크로스문화, 트랜스문화. 글로벌창의문화연구 7(1), 5-21.
- 김성윤. 2018.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 진화된 혐오담론으로서 젠더 이퀄리즘과 반다문화. 문화과학 93, 93-119.
- 김지윤 외. 2014. 달한 대한민국 :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2014. 2. 4.).
- 박정수. 2013. 민족주의와 다문화: 중국식 다문화주의 '다원일체문화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47(3), 5-23.
- 설 한. 2014.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퇴조 원인 분석: 문화개념과 규범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7(1), 81-106.
- 설동훈. 2017. 한국의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문화와 정치 4(3), 85-122.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내영 · 윤인진. 2016.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재)동아시아연구원.
- 이산호 · 김휘택. 2017. 국가 정체성과 다문화주의, 그 위험한 관계-프랑스의 경우. 다문화 콘텐츠연구 24, 39-62.
- 이신동 · 박용한.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발달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1-19.
- 이용승. 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177-205.
- _____. 2011.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패러다임 연구 및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학술대회(2011.05), 65-80.
- 이용재. 2012. 다문화사회 개념에 대한 고찰-갈등의 양상과 해소를 중심으로. 다문화외인간 1(1), 35-61.
- 이종석. 1984. 미국 다문화교육의 이론적 고찰, 미국학논문집 5, 35-60.
- 장명선 · 이옥경. 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

족재단연구사업보고서.

- 전영평 · 한승주. 2006. 소수자로서 외국인노동자: 정책갈등 분석. 한국행정연구 15(2), 157-184.
- 조상식. 2009.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한계. 한국교육철학학회 44, 139-155.
- 조현상. 2012. '다문화 담론'의 한계상과 유효성에 관한 고찰 : 한국 다문화사회 수렴과정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63(63), 219-246.
- 최종렬. 2012. 탈영토화와 다문화주의 : 연구쟁점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20, 97-159.
- 최혜지. 2017.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간 비교- 이민국가 레짐을 기초로. 한국사회정책 24(2), 217-244.
- Ang, Ien. 2010. Between Nationalism and Transnationalism: Multiculturalism in a Globalising World Institute for Culture and Society Occasional Paper 1(1).
- Ernest Gellner.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민족과 민족주의 :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 최한우 옮김. 2009.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출판부.
- Forrest, James and Kevin Dune. 2006. 'Core' culture hegemony and multiculturalism: Perceptions of the privileged position of Australians with British backgrounds, Ethnicities 6(2), 203-230.
- Martiniello, Marco. 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윤진 옮김. 2002. 한울.
- Negri, Antonio & Hardt, Michael. 2000. Empire. 제국. 윤수중 옮김. 2002. 이학사.
- OECD. 2015. Employment Outlook 2015.(2015. 6.).
- OXFAM. 다보스 불평등보고서 2019 : 공익이냐 개인의 부냐.(2019. 1.).
- Scott, D. 2003. Culture in Political Theory. Political Theory 31(1), 92-115.
- Stephen Castles, Mark J. Miller. 199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옮김. 2013. 일조각.
- United Nations. 2017.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2017. 12.).
- Will Kymlica. 2005. "Liberal Multiculturalism", Will Kymlica-Baogang He ed., Multiculturalism in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2-55.
- 米山リサ, 「多文化主義論」, 綾部恒雄 編, 『文化人類學 20の理論』, 弘文堂, 2006.

● 투고일: 2019.07.06. ● 심사일: 2019.07.26. ● 게재확정일: 2019.08.06.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of Multicultural Studies: Focused on the Limitations and Overcoming of Government-led Multicultural Discourse

Lee Youngjea (GyeongSangBuk-Do Council)

As Immigrant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increased, Korea needed the new policies for immigration. The multicultural policy for assimilation has been promoted,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enacted in 2008. The target of the government-led 'multicultural policy' is limited to married immigrant women. In spite of the broad spectrum of multiculturalism, domestic research is focused on 'nation building' through 'assimilation'. There are 1,096 studies(31.32%) on education and 414 studies(11.38%) on multicultural families. But there are only 54 studies(1.54%) on conflicts in the multicultural researches. The government's policy interests has changed, so the number of researches is gradually declining. Many researches accepted governmental viewpoints on immigrants, the instrumental and hierarchical perspectives that view them a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not to follow the anti-culture phenomenon faced, it is necessary to seek the internal changes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unequal power relations in the society.

<Key word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tudies, Assimilation, Integration, Conflict